

수원고등법원 2021. 9. 16 선고 2021나10254(반소)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래영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선희

반소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안, 박종욱

반소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류정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환

변 론 종 결 2021. 8. 26.

판 결 선 고 2021. 9. 16.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19가합16959(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반소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반소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반소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반소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과 반소피고가 2017. 12. 8. 체결한 '보조참가인이 화성시 F로트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반소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반소피고가 화성시 F로트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조참가인은 2016. 4. 11.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화성시 F로트(구 지번: 화성시 H,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았다.

나. 보조참가인은 2017. 12. 8.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위 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대금 6,453,92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원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양도계약은 보조참가인의 채권자들인 반소원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반소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363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반소원고들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반소원고 B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반소원고 B의 주장 요지

반소원고 B은 2015. 8. 4. l을 통하여 보조참가인에게 3억 원을 대여하면서 보조참가인이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인 서울 강남구 G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준공된 후 투자 수익금으로 2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도 대여금 3억 원만 변제받고 2억 원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반소원고 B은 소외 회사에게 2억 원의 약정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반소원고 B 주장의 위 약정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와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청주지방법원 2018가단37918호로 반소원고 B을 상대로 하여 반소원고 B 주장의 위

약정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반소원고 B은 반소로써 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같은 법원 2019가단27802호), 위 법원은 2019. 12. 12. “보조참가인과 반소원고 B 사이의 2015. 8. 4.자 투자에 기한 보조참가인의 반소원고 B에 대한 2억 원의 수익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한편, 반소원고 B의 위 반소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반소원고 B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청주지방법원 2020나10344(본소), 2020나10351(반소)], 위 항소심 법원은 2020. 11. 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반소원고 C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반소원고 C의 주장 요지

반소원고 C는 2016. 1. 20.경 보조참가인에게 9,2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30%로 하여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으므로,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대여금 원금 9,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금원을 지급한 날의 다음날인 2016. 1. 22.부터 2018. 2. 7.까지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청주지방법원 2018가단37895호로 반소원고

C를 상대로 하여 반소원고 C 주장의 위 대여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반소원고 C는 반소로써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같은 법원 2019가단34749호), 위 법원은

2020. 6. 19. “보조참가인과 반소원고 C 사이의 2016. 1. 20자 및 2016. 1. 2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보조참가인의 반소원고 C에 대한 9,2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한편, 반소원고 C의 반소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반소원고

C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청주지방법원 2020나14490(본소), 2020나14506(반소)], 위

항소심 법원은 2021. 6. 1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반소원고 주식회사 A(이하 '반소원고 A'이라고만 한다)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반소원고 A의 주장 요지

반소원고 A은 보조참가인에게 공사대금 173,355,3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5,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반소원고 A이 2016. 3.경 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이 2017. 4.경 완공된 사실, 반소원고 A이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보조참가인은 반소원고 A에게 173,353,343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부터 2018. 4.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실(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5680, 수원고등법원 2019나20678, 대법원 2020다247114, 이하 반소원고 A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고 한다)이 인정되나,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반소원고 A은 위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2018. 2. 22. 수원지방법원 2018카단496호로 소외 회사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보조참가인은 2018. 4. 12. 수원지방법원 2018년금제3352호로 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을 원인으로 195,350,661원을 공탁하였던 점, ② 반소원고 A의 압류채권자인 대한민국(동수원세무서)은 2021. 3. 22. 수원지방법원 J로 진행된 위 ①항 기재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위 공탁금 및 이에 대한 이자 196,148,371원을 배당받아 반소원고 A의 국세채무에 충당하였던 점, ③ 보조참가인은 2021. 3. 22. 위 배당 직후 수원지방법원 2021년금제3400호로 반소원고 A을 피공탁자로 하여 54,005,764원을 공탁한 점, ④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액수는 위 2021. 3. 22. 현재 원리금 합계 250,088,770원2) 이고, 같은 날 위 압류채권자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 196,148,371원 및 위 공탁금 54,005,764원의 합계는 250,154,135원으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을 초과하는 점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반소원고 A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결국 반소원고들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반소원고들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각 채권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하였으므로 그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반소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상회복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반소원고들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반소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반소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제정, 판사 박광서, 판사 차지원

1)반소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15437호로 반소원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반소원고들이 위 소에 대한 반소(수원지방법원 2019가합16959, 이 사건의 제1심)를 제기한 이후인 2019. 12. 4.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본소를 취하하였다.

2) ① $173,355,343\text{원} \times [353/365(2017. 5. 1.\text{부터 } 2018. 4. 18.\text{까지})] \times 0.06 = 10,059,359\text{원}$

② $173,355,343\text{원} \times [1 + 43/366(2018. 4. 19.\text{부터 } 2019. 5. 31.\text{까지})] \times 0.15 = 29,058,334\text{원}$

③ $173,355,343\text{원} \times [1 + 295/365(2019. 6. 1.\text{부터 } 2021. 3. 22.\text{까지})] \times 0.12 = 37,615,734\text{원}$

이자 합계 76,733,427원, 원리금 합계 250,088,770원